

처분 사전 통지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및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(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)의 규정에 해당되어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19. 02. .

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이사장



1. 공시송달기간 : 2019.02.18. ~ 2019.03.04. 【15일】
2.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

가. 제 목	처분 사전 통지(청문 실시 통지)			
나. 대 상 자	주식회사 지*디자인산업			
성 명	주소			반송사유
이 * 향	전남 함평군 학교면 영산로 3***			폐문부재
다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<u>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(5개월)</u>			
라. 처분의 원인	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			
마. 법적근거	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			
바. 문 의 처	기관명	재)의정부예술의전당	담당부서명	행정지원부
	주 소	경기 의정부시 의정로 1 (의정부2동) (☎ 031-828-5807, FAX 031-828-5809)		

3. 유의사항 : 공고기간 중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4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(재)의정부예술의전당 이사장

귀하

유의사항

-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